

법무부령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폐지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법무부장관)
연 월 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상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을 폐지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을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6. 9. 14. ~ 9. 21.)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무부령 제 호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폐지령안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 10. 2.부터 시행한다.